

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

주 의 요 구

제 목 징계부가금 부과의결 요구 미이행

기 관 명 광주광역시 서구

내 용

광주광역시 서구에서는 2014. 5. 16. ○○지방검찰청으로부터 ○○○○과 지방○○○○○ ○○○이 ‘업무상 횡령’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는 내용의 공무원 범죄 처분결과 통보를 받고 같은 해 5. 30. 위 혐의자에 대해 광주광역시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였다.

「지방공무원법」 제69조의2제1항 및 「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」 [별표1의2] “징계부가금 부과 기준”의 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의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그 징계 사유가 금품 및 향응 수수(授受), 공금의 횡령(橫領)·유용(流用)인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금품 및 향응 수수액, 공금의 횡령액·유용액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인사위원회에 요구하도록 되어 있으며, 「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」 제8조의2에 따라 인사위원회는 금품 및 향응 수수액, 공금의 횡령액·유용액의 5배 내에서 징계부가금의 부과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.

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인사위원회가 아닌 징계의결요구자가 해당 혐의자의 공금횡령에 대해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는 것이 과하다고 판단³²⁾하여 징계의결요

구서 징계사유에 공금횡령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고서도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을 표시하는 칸에 ‘해당 없음’으로 표시하여 광주광역시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였다.

그 결과 광주광역시인사위원회에서는 징계혐의자에 대해 건책의 징계를 의결하면서 징계부가금에 대한 심의를 누락함으로써 최대 386만원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하지 못하였다.

[표] 징계의결요구자 현황

소 속	직급	성명	혐의내용	징계의결요구서			인사위원회 의결		
				요구자 의견	징계 부가금	요구일	결과	징계 부가금	의결일
광주광역시 서구	지방○ ○○ ○○	○○○	공금횡령	경징계	미요구	2016.0.00.	건책	미부과	2016.0.00 .

조치할 사항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은

[주의] 「지방공무원법」 제69조의2 제1항 및 「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」에 따라 징계부가금 부과결 요구대상을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.

32) 2016.6.11. 인사위원회에서는 업무상횡령으로 징계의결 요구된 ○○○과, ○○○에 대한 징계양정 심의시, ○○○에 대해서만 징계부가금이 부과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으나, 당시 광주광역시 서구청 ○○○○관에서 근무하던 ○○○는 동 위원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는 것이 과하다고 판단하여 징계부가금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진술함